

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기술성능확인 : 120일 (현장평가기간 제외)
기술 분야	[] 대기, [] 수질, [] 폐기물, [] 소음·진동, [] 악취방지, [] 측정·분석 [] 토양·지하수, [] 자연환경의 보전·복원 [] 그밖의 분야		
기술명			
기술보유자	성명(법인명)	주소(법인인 경우 소재지)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기술개요			
성능확인 항목 및 성능			
주요 활용목적	[] 국내 사업홍보, [] 해외진출용() ※ 해외진출용일 경우 주요 대상국가명을 기재		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기술 성능확인을 신청합니다.			
		신청인	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		귀하	
첨부서류	1. 환경기술의 연혁·원리 및 타당성을 기술한 서류 1부 2.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사항 및 성능확인방법을 기술한 서류 1부 3.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각 1부 4. 국내외의 산업재산권(출원을 포함한다)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. 국내외의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(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		수수료 「에너지·환경산업진흥법」 제31조제2항 에 따른 에너지·환경 사업의 대기기준에 따라 정한 금액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